

한국미술교육학회 정관

학회 회칙 제10장 제35조 【별표1, 2, 3, 4, 5, 6, 7】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미술교육학회(KOREA ART EDUCATION ASSOCIATION)라 칭하고 줄여서 한국미술교육학회, KAEA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학술활동을 통하여 미술교육학의 발전을 도모하며 미술교육의 진흥과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직장 소재지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① 정기 학술발표대회, 강연회, 심포지움 등의 개최
- ② 정기 학술지, 연구물, 미술교육자료 도서 및 정보지 등의 발간
- ③ 미술교육 매체 개발과 보급
- ④ 국내외 유관 학회, 국가기관연구소, 기타 학술 및 연구단체와 교류 및 협력
- ⑤ 공공사업과 미술교육 정책 및 시행에 관한 자문
- ⑥ 전시회 및 미술문화 답사회 개최
- ⑦ 연구의 장려 및 우수업적 표창
- ⑧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위원회와 지부)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과 입회)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 학회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는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① 준회원: 미술교육학 및 미술학 분야에 관한 전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회비를 1회 이상 낸 자로 한다.
- ② 정회원: 미술교육학 및 미술학 분야에 관한 전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낸 자로 한다.
- ③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개인으로 한다.
- ④ 단체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학 및 국공립 도서관, 공사립 미술관, 문화단체, 출판사 등으로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관에 정해진 모든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연회비 : 40,000원, 입회비 : 20,000원
- ② 십년회비 : 300,000원
- ③ 종신회비 : 650,000원
- ④ 임원회비 : 100,000원
- ⑤ 기관회비 : 50,000원

제 9 조 (자격 정지 및 회복) 회원이 본 학회의 의무를 2년 이상 이행치 않은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단, 의무를 재 이행할 시에는 자격이 회복된다.

제3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구성) 본 학회는 회원 중 회장 1명, 부회장 6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상임이사 6명, 다수의 지역이사, 자문위원 및 고문으로 구성한다.

- ① 부회장과 감사는 미술교육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교원, 연구원 및 대학의 교수로 구성한다.
- ② 상임이사는 총무이사, 재무이사, 편집이사, 법인이사, 학술이사, 대외협력이사, 국제교류이사, 연구윤리이사로 구성하고, 편집이사, 학술이사, 대외협력이사, 국제교류이사, 연구윤리이사는 각각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 ③ 지역이사는 각 지역에서 미술교육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자로 구성한다.

- ④ 자문위원과 고문은 미술교육에 기여도가 높은 자로서, 학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고, 각 임기운영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다.
- ②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지역이사, 자문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 및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 ③ 단, 편집이사의 임기는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단, 전임자의 결원으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은 전문성을 갖추고 본회 입회 5년 이상인 자 중, 이사회에서 합의 또는 선 거를 통해 선출하며, 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 ② 회장이 임기 중 결원되면 이사회에서 선임한 수석 부회장이 잔여임기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원활한 학회의 운영을 위해 전임 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⑤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요청 시 학회의 직무를 분담 관장한다.
- ③ 감사는 본 학회의 모든 업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 ④ 총무이사는 학회의 제반 사업을 총괄하고, 전자소식지를 년 3회 발행한다.
- ⑤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기 학술지, 도서출판 업무 및 학술지 공인심사기관의 평가대비 업무를 관장한다.
- ⑥ 재무이사는 학회재정의 제반 업무 및 회원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 ⑦ 학술이사는 학술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기학술대회와 발표집 발간 및 미술문화답사, 전시회를 기획하고, 제 업무를 관장한다.
- ⑧ 대외협력이사는 대외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공공사업과 미술교육 정책 및 시행에 관한 건의와 자문 업무를 관장한다.
- ⑨ 국제교류이사는 국제교류위원회를 대표하고, 국내외의 미술교육 관련 단체와

의 교류업무 및 국내외 학회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 ⑩ 연구윤리이사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제정 및 회원의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제 업무를 관장한다.
- ⑪ 지역이사는 각 지부와 협력하고, 회장이 요청 시 직무를 분담 관장한다.
- ⑫ 고문과 자문위원은 학회의 제반업무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한다.

제 14 조 (자문위원과 고문의 자격 및 임무)

- ① (자격) 전직 학회장 및 학회 발전에 공헌도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② (임무) 고문과 자문위원은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하고 지원한다.

제4장 회 의

제 15 조 (회의의 종류) 본 학회는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를 둔다.

제 16 조 (총회)

-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장 및 감사 선출
 - 나.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의 승인
 - 다. 사업 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라. 기타 중요 위임사항의 승인
 - 마. 본 학회의 해산
- ②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정기학술대회 중에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는 총회를 대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총회나 전자소식지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 ③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 수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7 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고문, 자문위원)을 포함한 이사(총무이사, 재무이사, 편집이사, 법인이사, 학술이사, 대외협력이사, 국제교류이사, 연구윤리이사, 감사, 지역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가.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나. 위원회와 지부의 설치 및 안건

다. 임원과 회원의 승인

라. 사업 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에 관한 사항

마. 사업 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사. 기타 중요사항

②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총회나 전자소식지에 모든 사항을 보고한다.

제 18 조 (위원회)

①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본 학회가 임명한 상임이사가 회장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을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학술지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가. 각 사업의 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각 사업의 세입, 세출 및 예결산의 작성

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라. 기타 중요사항

②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가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별도의 편집위원회관리규정을 따른다.(별표1)

③ 학술위원회는 본 학회가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별도의 학술위원회관리규정을 따른다.(별표3)

④ 국제교류위원회는 본 학회가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별도의 국제교류위원회관리규정을 따른다.(별표4)

⑤ 대외협력위원회는 본 학회가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별도의 대외협력위원회관리규정을 따른다.(별표5)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관리규정을 따른다.(별표6)

제5장 지 부

제 19 조 (지부구성) 본 학회는 광역자치단체와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몇 개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지부는 강원(01), 경기·인천(02), 경남·부산(03), 경북·대구(04), 서울(05), 전남·광주(06), 전북(07), 제주(08), 충남·대전(09), 충북(10)으로 구분한다.

제 20 조 (지부활동) 본 학회의 지부는 지역이사, 지부장 및 간사 등의 임원을 두고, 지역 회원들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학회성격에 부합하는 연구 및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제6장 재 정

제 21 조 (재정, 관리) 본 학회의 재정은 학회 재무이사가 회원관리와 함께 관장한다. 그 재원은 회비, 입회비, 특별회비(십년회비, 종신회비, 임원회비), 찬조금,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22 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3 조 (회비) 제8조항의 회비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24 조 (감사) 재무이사는 연 3회 전자소식지가 발행되는 각 시점에 감사에게 세입·세출·예결산을 감사받아야한다.

제7장 학술지 발간

제 25 조 학술지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며, 매년 4회 발간한다.

제 26 조 (학술지 발간일정)

- ① 투고논문공고는 원고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공고하고, 원고마감일은 발행 예정일로부터 70일 이전으로 한다.
- ② 원고심사는 원고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한다.
- ③ 게재 원고의 선정 및 심사 결과 공표는 심사 종료 이후 15일 이내로 한다.
- ④ 학술지 인쇄는 게재원고가 선정된 이후 1개월 이내로 한다.

⑤ 학술지 배포는 인쇄 이후 1개월 이내로 한다.

⑥ 권 - 호별 학술지 발간 일정은 논문 투고규정에 따라 실시한다(별표7).

제 27 조 학술지 투고논문심사는 별도의 관리규정을 따른다(별표2).

제8장 학술대회 및 행사

제 28 조 학술대회 및 기타행사는 학술이사가 관장한다.

제 29 조 본 학회는 회원들의 정기적인 학술활동을 매년 1회 개최하고 기타행사는 이사회
의 결정에 따라 개최한다.

제 30 조 학술대회 및 기타행사의 일정과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장 논문 투고 규정

제 31 조 본 학회 학술지의 논문은 별도의 논문투고규정을 따른다(별표7).

제10장 전자소식지

제 32 조 학회 전자소식지는 1년에 3번 발행하고, 그동안의 학회소식과 이사회와 위원회에
서 결정된 내용, 분기별 회계결산, 회원들의 동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총무이
사가 관장한다.

제11장 기 타

제 33 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34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재적수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 35 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36 조 (관례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① 본 정관은 1992년 1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제1차 개정 정관은 1998년 7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③ 본 제2차 개정 정관은 2004년 1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본 제3차 개정 정관은 2010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본 제4차 개정 정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⑥ 본 제5차 개정 정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미술교육학회 연구 윤리 규정

한국미술교육학회(이하 학회)는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학회와 관련한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또한 학회 임원은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윤리적 기초 위에서 우리 학회는 한국 미술교육의 연구와 실천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윤리헌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윤리헌장]

1. 회원은 학회의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며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회원은 미술교육 연구자 및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미술교육 분야의 발전과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 회원은 연구 관점과 방법론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동료 연구자의 성과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식과 격려의 태도를 갖는다.
4. 회원은 타 전공 영역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전공 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5.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성, 계층, 연령, 인종, 지역 등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는다.
6.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인용, 표절, 자료의 위조와 변조 및 저작권 침해, 중복 게재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7. 회원은 연구 중 취득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연구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8. 회원은 각종 심사와 자문에 임할 때,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연구 윤리 운영규정]

제1조 위원회의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는(이하 위원회) 제소된 회원의 연구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 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한다.
2. 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 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소한 회원에게 심의 결과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2조 연구 윤리 위반행위

1. 무단도용 및 (자기)표절
 - ① 원 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도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 본인의 기 발표 또는 기 간행 연구 성과의 재투고
2. 연구 데이터의 조작
3. 부당한 저자 표시
4. 동시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
5. 기타 연구윤리헌장의 정신에 반하는 사항

제3조 연구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1. 제소인은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제보를 받으면 사안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회의 절차를 진행한다.
3. 제소된 회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출석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징계 판정 및 절차

1. 징계회의는 회장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2. 표결판정이 난 경우 위원장은 제소된 회원에게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5조 징계의 종류

1. 회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2. 학회지 논문 투고 및 게재 자격 정지 또는 제한
3. 해당 논문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제6조 재심청구

1. 제소인과 피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2. 재심이 청구된 사안은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3. 재심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된다.

제7조 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한국미술교육학회 연구 윤리 규정 개정 일자]

2010년 3월 2일 신설

2014년 3월 14일 개정

*** 【별표 1】**

편집위원회 관리규정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 및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결원 후원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선정 기준〕

1.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로서, 미술교육학 및 미술학 분야에서 연구 활동 및 업적이 탁월한 대학교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미술교육학 및 미술학 분야에서 연구 활동 및 업적이 뛰어난 대학의 조교수급(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관련 전문직에 종사하는 회원) 이상으로 한다.

〔선정 절차〕

1.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한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임무 및 운영〕

1.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위원회를 학술지 발간시기에 임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을 겸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외부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논문투고요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투고논문 심사기준 및 평가도구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 4) 논문집 편집과 인쇄에 관한 사항
- 5) 논문 게재료에 관한 사항
- 6) 기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편집이사가 위촉하는 사항
- 7) 논문의 (자기)표절, 중복 게재, 저작권 등 연구 윤리 문제와 관련된 학회 규정을 제정한다.
- 8) 연구 윤리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될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학회 윤리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한다.

[편집위원회 관리규정 개정 일자]

2003년 2월 22일 개정

2004년 1월 30일 개정

2006년 11월 4일 개정

2014년 4월 1일 개정

*** 【별표 2】**

투고논문심사 관리규정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1. 논문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및 임시 위촉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논문 한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논문심사〕

1. 심사의 공정성을 높인다.
 - 1) 논문심사는 투고자의 이름 및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 2) 논문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 1) 논문심사 시 심사위원은 3편 이내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다.
 - 2)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2차에 걸쳐 실시한다. 예비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자격 및 논문 체재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본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개발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심사위원들이 심사한다.
 - 3) 공시한 권-호의 원고 마감일 까지 접수된 원고에 한하여 심사자격을 부여하고, 그 이후 접수된 원고는 자동으로 다음호 심사로 넘어간다.
 - 4) 논문 1편당 3인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산출한다.
 - 5) 편집위원회가 개발한 평가도구의 평가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5점 평가척도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

판 정	매우 높음	높 음	3점	2점	1점
점 수	5점	4점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논문 심사절차〕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접수하여 위촉된 해당분야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고, 심사방법은 본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평가도구인 심사결과서 서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점수를 합산하고, 편집위원회가 정한 다음과 같은 평균점수 기준에 의해 제출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게재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 0.2 범위에서 점수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단, 3인의 심사위원 중 두 사람이 '게재 불가'로 판정했을 경우에는 평균 3.0 이상이 라도 '게재 불가'로 한다.

점수범위	3.0 미만	3.0~3.99	4.0~5.0
판 정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능	게재 가능

4.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결과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학회지 '게재 불가' 판정할 경우, 심사결과서의 종합 의견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단 투고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6.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지적 사항에 대한 수정된 원고와 〈수정확인서〉를 제출한 후,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7. 수정 후 게재 논문에 대해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8.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는 〈게재〉, 〈다음호 게재 가〉,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 단, 재심사에서 〈다음호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이 다음 호에 재 투고시, 본 심사는 지난 심사 점수를 인정하여 면제하고, 편집위원회의 최종 재심사를 거쳐 다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9. 편집위원장은 심사 완료된 논문의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의 필요한 사항 및 '수정 후 게재' 결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요구한다.
10. 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이사가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심사 기준, 평가 방법 및 평가도구]

- 논문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중요성
 - 연구내용과 전개적 적절성 및 논리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적절성
 - 표현방법과 형식의 적절성

2.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회가 위의 4가지 논문심사기준을 통해 각 세부항목으로 점수화한 평가도구를 심사결과서로 한다. 심사결과서는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 판정내용 및 종합의견으로 구성한다.
- 2) 각 심사논문의 평가방법은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에 대한 평균점수로 산출한다.
- 3) 심사위원들은 모든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 논문 심사 결과서

점수번호								
논문제목	한 글							
	영 문							
◆ 상기논문에 대한 심사결과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								
	문	항	매우 높음 5점	높음 4점	보통 3점	낮음 2점	매우 낮음 1점	비 고
(1) 주제	①	논문주제의 독창성(2배 가중치) - 논문 주제가 참신한가? - 중복이나 표절이 아닌 독창적인 내용인가?						
	②	논문제목의 적합성 - 논문 제목은 논문 내용을 잘 함축하고 있는가? - 논문 제목을 보고 그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가?						
	③	미술교육과 관련성(2배 가중치) - 논문 내용이 미술교육과 관련된 것인가? - 논문 내용이 학회의 정체성에 부합하는가?						
	④	논문 주제의 시사성 - 논문이 최근 연구 동향과 내용을 반영하는가? - 논문이 본질적 기초연구로서 가치가 있는가?						
(2) 내용	①	연구내용의 체계성(2배 가중치) - 목차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연구내용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는가?						
	②	내용과 참고문헌의 관련성 - 연구내용에 적합한 참고문헌을 활용하는가? - 인용이 내용 전개에 적합한가?						
	③	영문초록의 질 - 영문초록이 논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가?						
	④	학문적 기여도와 활용가능성(2배 가중치) - 연구가 미술교육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가? - 연구 결과는 미술교육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가?						
(3) 연구방법	①	타당한 연구방법의 선정 -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연구 방법인가? - 독창적인 연구 방법을 선택했는가?						
	②	적절한 연구방법의 전개(2배 가중치) - 연구 방법의 전개가 타당한가? - 연구방법의 활용이 적합한가?						
(4) 표현과 형식	①	연구내용 진술의 명료성(2배 가중치) - 진술한 연구 내용의 의미가 잘 전달되는가? - 표현한 내용이 주장하는 바를 잘 전달하는가?						
	②	학회투고규정의 준수(2배 가중치) - 학회 투고규정을 숙지하여 적용하는가? - 오타자가 없고, 외래어 등의 표기가 적절한가? - 표와 그림의 표기가 일관성이 있고 적절한가?						
	③	참고문헌과 인용, 각주의 일치성과 적절성 - 참고 및 인용한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가? - 인용한 것과 참고문헌이 일치하고 규정에 부합하는가?						
총배점 합계								
평점(총배점 합계/20항목)								

2. 판정 내용			
평 점 범 위	4.0~5.0	3.0~3.99	3.0미만
판 정 내 용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가능	게재 불가
판 정			
3. 종합 의견			

※ 본 심사표는 사이버 심사표와 그 내용이 동일하나, 형식이 다소 다릅니다.

심사일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_____

직위 _____

성명 _____

[투고논문 심사관리규정 개정 일자]

2003년 2월 22일 개정

2004년 1월 30일 개정

2004년 5월 24일 개정

2006년 11월 4일 개정

2011년 4월 30일 개정

*** 【별표 3】**

학술위원회 관리규정

[목 적]

1. 본 학회의 학술행사 운영 및 학술 연구 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과 임기]

1. 학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상의 학술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 및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자격과 임명]

1. 위원장은 본 학회의 학술이사로서 그 직을 맡는다.
2. 위원은 회원 중 미술교육 전반에 걸쳐 학술연구업적이 탁월한 자로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임 무]

1. 학술위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 전반에 대한 모든 활동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참여하며, 학술대회를 관장하고, 학술대회 발표집을 발간하고 미술문화답사 및 전시회를 기획 운영한다.

[학술위원회관리규정 신설 일자]

2010년 3월 1일 신설

*** 【별표 4】**

국제교류위원회 관리규정

〔목 적〕

1.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의 학술교류 및 홍보업무를 목적으로 한다.

〔구성과 임기〕

1. 국제교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 및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자격과 임명〕

1. 국제교류위원장은 본 학회의 국제교류이사로서 그 직을 맡는다.
2. 위원은 회원 중 외국어가 탁월한 자를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임 무〕

1. 국제교류위원은 국내외의 학술교류 및 논문발표 등을 활발히 하도록 관장한다.

〔국제교류위원회관리규정 신설 일자〕

2004년 2월 24일 신설

*** 【별표 5】**

대외협력위원회 관리규정

[목 적]

1. 국내의 공공사업과 미술교육 정책 및 시행에 관한 건의와 자문 업무를 목적으로 한다.

[구성과 임기]

1. 대외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 및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자격과 임명]

1. 대외협력위원장은 본 학회의 대외협력이사로서 그 직을 맡는다.
2. 위원은 회원 중 대외교섭력이 뛰어난 미술교육 담당자를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임 무]

1. 대외협력위원은 공공사업과 국내의 미술교육단체와의 정책연대 활동을 관장한다.
2. 미술교육 정책 및 시행에 관한 건의와 자문활동을 관장한다.

[대외협력위원회관리규정 신설일자]

2010년 3월 1일 신설

*** 【별표 6】**

연구윤리위원회 관리규정

[목 적]

1. 본 학회의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 제정 등 연구 윤리 확립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과 임기]

1. 연구윤리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 및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자격과 임명]

1. 위원장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이사로서 그 직을 맡는다.
2. 위원은 회원 중 연구 윤리 의식이 투철한 자로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임 무]

1. 연구윤리위원은 학회와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 관련 고발 사항이나 연구 부정행위, 학회 관련 연구의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기타 회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의결 등 연구 윤리 확립에 관한 제 업무를 관장하고 운영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관리규정 신설일자]

2014년 3월 14일 신설

* 【별표 7】

논문 투고 규정

1. (논문투고 방법)

- 1-1. 논문제출자격은 회비를 계속 납부한 본 학회 준회원과 정회원에 한한다. 비회원의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 준회원 가입·등록절차 후 투고할 수 있고,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저자 중 1인 이상 위와 동일한 논문제출자격을 구비한 뒤 논문을 제출한다. 단, 초청 원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2. 본 학회지의 투고 논문은 미술교육학에 관한 국내외 학술지에 미발표된 연구논문으로 한정한다.
- 1-3. 본 학회지의 투고 논문은 본 학회 규정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원고 작성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할 수 있다. 이 때 파일명은 “논문 제목.hwp”로 하고 파일명과 국문 및 영문 초록을 포함하여 논문 전반에 투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소속 등)가 포함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1-4. 모든 논문의 제출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kartedu.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의 투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학회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다.
 - 2)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메뉴 중 ‘온라인 논문투고’를 클릭한다.
 - 3) ‘온라인 논문투고’의 논문심사일정 창에서 논문투고방법을 확인한다.
 - 4) ‘온라인 논문투고’의 논문투고 창에서 모든 인적사항과 논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투고원고 칸의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논문 파일을 첨부한다.
 - 5)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투고원 및 저작권 위임 동의서를 다운받아 함께 업로드한다. 이 때 논문의 영문제목, 유사도검사 수치,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유사도검사는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6개월 기준 유사도 검사 결과가 표기된 PDF파일은 학회 메일로 별도 송부한다.
(▶<http://www.cre.or.kr/article/notice/1384408>)
- 1-5. 논문투고에서 단독연구일 경우는 호(집)당 1인 1편을, 공동연구인 경우는 2편 이하를 할 수 있다. 1인이 단독연구 1편, 공동연구 1편의 투고가 가능하다.

- 1-6. 미술교육논총은 연 4회 발간하며, 정관 제7장 26조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학술지 발간 일정을 시행한다.

호	발행 예정일	원고마감	1차 심사발표	수정/보완	최종게재발표
1	03.30	02.25	03.08	03.15	03.22
2	06.30	05.25	06.08	06.15	06.22
3	09.30	08.25	09.08	09.15	09.22
4	12.30	11.25	12.08	12.15	12.22

※ 위의 일정은 **종료일**을 기준으로 표기한 것임.

- 1-7. 본 학회지의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1) 논문 심사료: 7만원
 - 2) 논문 게재료: 기본 인쇄비와 추가 인쇄비를 합산하여 개별 통보
(기본 20만원, 교내외 연구비를 수혜 받은 논문은 10만원 추가 납부)
 - 3) 추가 인쇄비: 정해진 분량(20쪽)을 초과한 논문은 1쪽 당 1만원씩을 추가 납부하며 최대 30쪽으로 제한한다. 별쇄본 추가 인쇄 시 10부당 4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 4) 신진 연구자 지원: 박사 학위수여 후 1년 이내에 2편의 투고 논문에 한하여 본 학회에서 게재료를 지원하고 투고자는 논문 심사료만 납부한다.
 - 5) 논문 심사료, 회비 및 입회비는 학회의 계좌번호로 납부한다. 납부 후 3일 내에 이메일 혹은 전화로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회 원 : 11만원(심사료-7만원, 연회비-4만원)
 - ② 비회원 : 13만원(심사료-7만원, 연회비-4만원, 입회비-2만원)
- ☞ 농 협: 170011-55-002367(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미술교육학회)

- 1-8. 투고논문의 채택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 1-9.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 1-10. 본 학회에 의해 표절, 중복게재 등의 연구 윤리 위반자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의 투고 및 게재와 관련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 [논문작성양식 및 세칙]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APA 6쇄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Style 6th version) 양식에 따른다.

2-1.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고, 처음에 국문초록과 말미에 영문초록(Abstract)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문과 영문초록에는 논문제목, 성명(full name), 소속을 본 학회규정의 양식 예를 참고하여 명기한다. 주제어(Key words)를 반드시 표기하며, 영문 초록 주제어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소문자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 성명의 영어 표기는 본인 의견을 존중한다.

2-2. 원고는 학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컴퓨터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원고는 맞춤법에 맞게 작성하고 고유명사 외에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 안에 한자(漢字) 또는 원어(原語)를 병기한다. () 안에 영문을 병기할 경우 고유명사 이외에는 첫 글자를 소문자로 기재한다.

예) (Problem)은 (problem)으로 기재함)

2) 저자명은 연구책임자를 처음에, 공동연구자(공동저자)를 나중에 적는다. 연구비를 수혜한 논문은 반드시 본문 제1쪽 아래에 그 출처를 밝힌다.

3) 국문초록은 10행 이내로 논문 제목아래 기술하고, 국문초록 아래 주제어를 2~4개를 제시한다.

4) 영문 초록은 800자 이내의 단일 문단으로 하고, 밑 부분에 2~4단어의 주제어(key words)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논문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는 영문초록을 검토하여 논문투고자들이 원어인 교정을 받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3. 연구 논문의 형식은 제목, 국문초록, 서론, 본론,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의 차례로 하고, 본 학회의 세부양식에 따른다. 특히 논문심사를 위해 별도의 1쪽에 제목과 목차를 작성하고, 논문의 본문 맨 위에 놓는다.

(별도의 1쪽은 인쇄되지 않음)

2-4. 외국 인명이나 지명 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나 원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때 논문 전반에 걸쳐서 일관된 방식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한글 표기

를 하는 경우 처음에만 한글과 원어를 병기하여 한글(원어)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듀이(John Dewey)는~’ 과 같이 표기한다.

2-5. 본문 내에서 강조할 부분은 작은따옴표로 표시하고 직접 인용이나 대화인 경우에만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 책명, 논문명은 한·중·일 책명의 경우 『』, 그 밖의 외국 책명과 논문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서양의 책명과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단, 번역서를 본문 내에서 직접 언급할 경우 한글(원어)로 병기한다.

2-6. 모든 이미지는 충분한 해상도를 갖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이 때 표 및 그림은 < >안에 일련번호를 붙인다.(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영문 논문인 경우에는 Table 1, Figure 1.)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중앙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중앙에 기재한다. 표 및 그림의 자료출처는 표 및 그림의 하단 우측에 밝히고,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따른다. 그리고 표 및 그림의 위치는 본문 중 내용에 알맞게 정한다. 특히 표와 그림제목은 워드프로세스의 그 기능(캡션달기)을 반드시 이용하여 작성하며, 그 순서는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소장처’ 순으로 작성한다. 작품명을 본문에서 언급하는 경우에도 「」를 사용하여 작품명을 표기한다.

예) 유영국, 「산」, 1981, 캔버스에 유채, 73×91cm, 작가 소장.

Vasily Kandinsky, 「Circles in a Circle」, 1923, Oil on canvas, 98.7×95.6cm, Philadelphia Museum of Art.

2-7. 약어는 처음으로 사용할 때에는 완전한 이름을 먼저 표기한 후에 본문 내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 미국미술교육협회(National Arts Education Association: NAEA)

PISA(The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8.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로, 도량 단위는 C. G. S.단위로 표현한다.

2-9. 인용, 주(외주와 내주)의 사용은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기는 다음과 같다.

1) 인용

- ① 직접 인용하는 경우: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인용문 앞뒤에 “ ”를 사용하고, 인용 내용 중에도 인용된 것이 있을 때는 ‘ ’로 표기한다. 그리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하고, 인용 부분의

위아래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며 좌우로 각각 3칸씩 들여 쓴다. 또한 3행 이상의 긴 문장을 인용할 경우 인용문 앞뒤에 “”를 사용하지 않으며, 내주의 사항은 인용문 끝에 제시한다.

예) 세종대왕이 ... 라고 전해진다(이호철, 1997, p. 210).

- ② 간접 인용하는 경우: 간접인용은 저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원문을 요약하거나 원문의 함축된 뜻을 연구자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며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재인용의 경우 반드시 재인용임을 표기한다.
예) ...'추구'의 과정이다(Barthes, 1985, Wilson, 1997에서 재인용).

2) 내주의 표기(본문 내의 인용 문헌)

- ①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쪽수를 반드시 표시한다.

예) 이 문제에 관하여 홍길동(2000)은..., 한 연구에 의하면, “.....”홍길동(2000, p. 25)은..., 홍길동(1993, p. 123)에 의하면, “.....”.

- ②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문장이 끝나는 지점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홍길동(1993)에 의하면....., ...하려는 시도이다(박태호, 1999; 최현섭 외, 2000; 홍길동, 1993, p. 27). 한 연구(홍길동, 1992; Anderson, 1990)에 의하면..., 최근의 연구(정인수, 1994; 홍길동, 1993; Smith, 1994)에 의하면,

- ③ 한 저자의 다수 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발행 연도 순으로 기재하고, 발행 연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출판연도에 영문자 a,b,c 등을 부여하여 차례로 나열한다.

예) 홍길동(1992; 1999; 2002...), 홍길동(1992a; 1992b)

- ④ 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저자명 가나다 순으로 표기하고, 첫 번째 이후의 언급에서도 2인의 저자를 모두 기재한다.

예) 김철수, 홍길동(1993)은, 한 연구(김철수, 홍길동, 1993)에서는....., Hallahan과 Kauffman(1994)에 의하면....., 한 연구(Hallahan & Kauffman, 1994)에서는...

- ⑤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한다. 4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000 외’, 영문의 경우는 ‘Eisner 외’ 혹은 ‘et al.’로 나타낸다.

예) 홍길동 외(1995)에 의하면..., 카우프만 외(1995)에 의하면..., 카우프만과 그의 동료들은(1995)....., 최근 연구(Kauffman et al. 1995)에 의하면....

- ⑥ 문장 내에서 공동연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김철수·홍길동·이순희’와 같이 가운데 점을 사용하지 말고, ‘김철수, 홍길동, 이순희’와 같이 쉼표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 ⑦ 번역된 단행본에서 인용을 했을 때는 괄호 안에 원저자명, 원저 출판연도와 번역연도를 함께 표기하며 두 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 한 연구(Eisner, 1997/2002)에서는..., 아이스너(Eisner, 1997/2002)는...

- ⑧ 여러 나라 저자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한, 중, 일, 서양의 순으로 기재한다. 가령 ‘최근 일련의 연구들(홍길동, 2002; 山本律, 1999; Eisner, 1997...)에 따르면’과 같이 표기한다. 동일 국가 내에서는 저자명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3) 외주(각주와 후주)의 표기

- ① 필요 시 각주(footnote)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각주는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힌다. 본문에 매긴 번호와 같은 번호로 표기한다.

- ② 후주(endnote)사용은 금한다.

3. [인용 및 참고문헌]

3-1. 참고문헌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 1) 저자 (년도). 제목. 출판 장소명: 출판사. 해당쪽수. 순으로 기재한다.
- 2) 저자명의 제시는 동서양 모두 성이 먼저 오고 다음에 이름이 오도록 한다.

예) 홍길동 / Eisner, E. W. / Ingram, J. B. 등

- 3) 참고문헌 목록은 한, 중, 일, 서양의 순으로 기재하되, 해당국의 인명표기 순서에 따른다. 동양권(한·중·일)의 저자명은 가나다의 발음순으로 먼저 표기하고, 서양권의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표기한다.
- 4) 참고 문헌의 약어 표기는 국제 약기의 관례에 따르며, 국문인 경우에는 원명을 명기한다.
- 5) 동양권(한, 중, 일)의 책명과 논문집명의 경우, 제목 그대로 제시한다. 국문의 책명과 논문집명은 진하게 처리하여 구분하고, 영문의 책명과 논문집명(집, 권, 호수 포함)은 이탤릭체 혹은 기울임체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6) 영문 참고문헌 저서 및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단행본의 경우도 동일). 단, 정기 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에서 대문자로 표기한다.
- 7) 영문논문으로 편집된 책의 부분인 경우에는 논문제목 다음에 마침표를 하고, 'In' 다음에 편저자 이름의 약자, 성 순서로 적고(논문에서의 순서와 다름), 편저자가 1인의 경우는 (Ed.), 2인 이상인 경우는 (Eds.), 한 후 책 이름을 적는다.

3-2. 단행본의 경우

① 저자가 1인 이상 및 재판인 경우

황정규(1984). **학교 학습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Airasian, P. W.(1991). *Classroom assessment*. New York: McGraw-Hill.

성영혜, 윤석희, 이경화(1994). **부모교육**. 서울: 문음사.

강민기 외 5인 (2006).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서울: 예경.

(저자가 복수일 경우, 3인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기재한다.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저자 외 나머지 인원수를 쓴다.)

(영문 저술의 경우 저자명과 출판 연도를 제시한 () 사이에는 한 칸 띄어쓰기를 한다. 이하 모든 조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Brookhart, S. M., Welty, W. M., & Freeman, D. J.(1992). *Liberty and freedom*. New Jersey: Prentice Hall.

문관용2001). **강의실 밖 고전여행**(2판). 서울: 미래출판사.

Lee, J. S.(1995). *School achievement* (3rd ed.). New York: Barn & Nobles.

② 편집한 서적인 경우

이용숙, 김영천(편)(1988). **질적 방법의 교육적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Berliner, W. H., & Calfee, R. C. (Eds.)(1988). *Teacher lore: Learning from our own experience*. New York: Macmillan.

③ 해당 논문이 편집한 서적의 부분인 경우(반드시 쪽수를 명기)

이정선(1988). 열린 교수-학습의 형태. 이용숙, 김영천(편). **질적 방법의 교육적 적용** (p. 48-68). 서울: 교육과학사.
 Lee, J. S.(1995). Social capital. In J. S. Coleman (Ed.). *capital and school achievement* (p. 38-48). New York: Prentice Hall.

④ 번역서의 경우

번역서의 경우 참고문헌은 저자. (번역연도). 제목. (역자명). 번역서명, 출판사 (원저출판 년도). 순으로 표기한다. 원어로부터 2차례에 걸쳐 번역된 서적은 중간 단계의 번역서를 제외하고 논문작성에 참고한 2차 번역서 정보만을 참고문헌 목록에 기재한다.

예) Eisner, E. W.(2002). *Educating artistic vision*.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 예경. (원저출판 1997).

⑤ 저자 또는 편집자가 없는 경우

전라남도교육청(1995). **특수학급 운영요람**. 광주: 전라남도교육청.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83).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rd ed.). Washington DC: Author.

3-3.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인 경우 반드시 해당 페이지를 밝히고, 같은 해 동일저자의 2편 이상 논문은 해당년도 뒤에 a, b, c를 기입하여 구분한다.

이성진, 이기우(1991). 영유아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효과. **교육학연구**, 29(4), 1-28.

Brookhart, S. M., & Freeman, D. J.(1992). Characteristics of teacher candid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4), 37-65.

- 장지성(2000a). 산수화 시 방식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 25-32.
- _____(2000b). 전통회화 수업에서 임모의 재인식. **교과교육학연구**, 4(2), 25-32.

3-4. 학위논문의 경우

- 백운현(1992). 아동의 선택적 금지 기제의 발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 Gold, N. C.(1981). *Meta-evaluation of selected bilingual education proj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3-5. 기타

① Eric Document의 경우

- Lee, J. S.(1998). Social capital and Korean parents. *Eric Document # 123*

② 학술대회 발표 논문

- 박정환(2004). 잘라낸 종이판화의 표현특성과 그 교육적 가능성. 한국미술교육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집 **미술교육**, 30-36.

- Lee, J. S.(1998). *Socializ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2nd Annual Conference of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 in Asia. Beijing. China.

③ 비학술지(잡지)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기고문, 논평, 논설, 칼럼 등의 경우

가급적이면 학술적 가치가 적은 비학술지는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질적 연구 혹은 현장연구에서 부득이 참고자료로 게재할 경우 참고문헌 작성양식에 따르되 자료취득일자과 웹사이트주소를 밝힌다.

- Kim, J.(1998.11.24). Beyond the melting pot. *Time*. 128. 72-73.
- 교원의 정년 단축(1998.11.22.). **한국교육신문**, 3면.

- New drug appears to sharply cut risk of death from heart failure. (1993, July 15). *The Washington Post*. pp. A1, A4.

- MacDonald, J.(2001, June 8) *Suggested sources for a position paper*. Retrieved August 10, 2001, from Illinois State University, Milner Library Web site:

<http://www.mlb.ilstu.edu/ressubj/subject/general/suggsrc.htm>

【양 식】

편집용지 설정: B5, 폭/190mm, 길이/260mm, 용지방향/좁게, 제책/한쪽
여백주기: 위/20, 아래/15, 왼쪽/27, 오른쪽/27, 머리말/20, 꼬리말/10, 제본/0
줄 간격/160, 표 및 각주 줄 간격/130, 정렬방식/혼합정렬
글자크기: 본문/신명조 11pt, 들어쓰기 10pt, 각주/신명조 9pt
참고문헌: 내어 쓰기 40pt

【제목 번호/크기】

1단계: I. II. III. IV. V /16pt(진하게, 가운데)
2단계: 1. 2. 3. 4. 5. 6. 7 /13pt(진하게, 1칸부터)
3단계: 1), 2), 3), 4), 5) /11pt(3칸부터)
4단계: (1). (2). (3). (4) /11pt(5칸부터)
5단계: ①. ②. ③. ④. ⑤ /11pt(1칸부터)
6단계: ㄱ, ㄴ, ㄷ, ㄹ, ㅁ /11pt(1칸부터)

4. [작성 예]

제목(진하게, 가운데 18pt)*

홍길동**

〈요약〉

미술교육.....1995년 필자는 우연히 미국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의 『작은 인간』과 『문화의 수수께끼』에서 생물학적으로 파악하기 짝이 없는 작은 인간이 지금의 이 엄청난.....

주제어:

I. 서론

1. 미술교육

1) 미술교육

(1)

①

ㄱ

* 이 논문은 2017년 00대학교의 학술연구비에 의해서 지원되었음.

** 00대학교 교수(1칸, 9pt), 이메일 주소 ※ 투고자 소속만 있을 경우 *을 하나만 사용한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Socializ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Korea

Hong Kil Dong(10pt)
(Hankook University)(10pt)

The art.....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Korea.

Key words :Total-Class, Narrative Experience, Symbol

■ 논문 투고규정 개정 일자 ■

1995년 2월 25일 개정
1999년 2월 20일 개정
2002년 2월 23일 개정
2004년 1월 30일 개정
2004년 7월 2일 개정
2006년 11월 1일 개정
2008년 4월 29일 개정
2009년 11월 14일 개정
2010년 2월 25일 개정
2011년 4월 30일 개정
2012년 4월 30일 개정
2014년 3월 7일 개정
2014년 7월 1일 개정
2015년 2월 14일 개정
2016년 4월 18일 개정
2017년 4월 23일 개정

(사)한국미술교육학회 입회원서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생년월일			
회원구분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 이 란은 비워 두세요.		
근무처	기관명		과/부서
	주소	(☎ -)	
	전화	FAX	
	E-mail		
자택	주소	(☎ -)	
	전화	핸드폰 번호	
우편물 수령지	소속기관() 자택()		
학력	출신교(학부)	대학과	졸업년도()
	최종교(대학원)	대학과	졸업년도() 학위()
경력	기간	근무처	내용
실기전공분야			
기타활동분야			
본인은 한국미술교육학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한국미술교육학회 회장 귀하			

회원 가입 신청자는 입회비 20,000원과 연회비 40,000원을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시고, 위의 입회원서양식
으로 학회 이메일에 보내주시거나 혹은 학회의 홈페이지에 직접 회원등록을 하여 주십시오.

- ▶ 농 협: 170011-55-002367(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미술교육학회)
- ▶ 학회홈페이지: <http://www.kartedu.or.kr>
- ▶ E-mail: kartedu@hanmail.net